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03호 2018. 1. 19.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훈 령

○ 삼척시 훈령 제279호 삼척시 계약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2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0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9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73호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계약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1월 일

삼 척 시 장 _____

삼척시 훈령 제 279호

삼척시 계약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삼척시 계약심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 중 “3억 원 이상 이며, 1회 설
 계변경 금액”을 “5억 원 이상(전문·기타공사의 경우 2억 원 이상)이
 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중 “3천만 원”을 “7천
 만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계약심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척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심사 및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삼척시(이하"시"이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본청의 실·과
 - 나. 직속기관, 사업소(공기업 포함), 읍·면·동, 출장소
 - 다. 의회사무과
 - 라. 시 출자·출연기관(단, 출자·출연비율 50% 미만인 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의 대상 및 범위) 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중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3억 원, 전문·기타공사의 경우 2억 원 이상인 공사. 다만, 설계변경 심사는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전문·기타공사의 경우 2억 원 이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인 용역

가. 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나.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그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의 사업

② 제1항의 계약심사 대상은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①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의 경우
 - 예시 :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5. 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시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의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위의 제1항의 제3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 할 때 강원도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강원도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청)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설계도서에 의해서만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방법) ① 계약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절차) ① 사업부서의 심사요청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이 실시한다.

② 사업부서에서 심사요청이 있을 때는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접수부에 등재한 후 심사담당자를 지정한다.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일(제6조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

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시설공사계약의 심사결과를 입찰공고시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삼척시 고시 제2018 - 10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1. 19.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370-20 외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1. 1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229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370-20	2018011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늑구리,점리)사용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면 상방방리 45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심방금계길 413	20180119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심방,금계)복합 활용	
3	강원도 삼척시 영진서길 3 (정상동)	폐지	20180119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영진안),지역위치활용	
4	강원도 삼척시 영진서길 7 (정상동)	폐지	20180119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영진안),지역위치활용	
5	강원도 삼척시 영진서길 13 (정상동)	폐지	20180119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영진안),지역위치활용	
6	강원도 삼척시 월계안길 16 (당저동)	폐지	20180119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월계골),위치활용	
7	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48-15	강원도 삼척시 자원길 20 (자원동)	2018011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8		이	하	여	백		
9							
10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계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갈리 229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녹구점리길 370-20	2018011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녹구리,점리)사용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명방리 45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심방로계길 413	20180119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심방,금계)복합 활용		
	폐지	3	강원도 삼척시 영진서길 3 (청상동)	폐지	20180119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영진안),지역위치활용	
	폐지	4	강원도 삼척시 영진서길 7 (청상동)	폐지	20180119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영진안),지역위치활용	
	폐지	5	강원도 삼척시 영진서길 13 (청상동)	폐지	20180119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영진안),지역위치활용	
	폐지	6	강원도 삼척시 황계안길 16 (담저동)	폐지	20180119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황계길),위치활용	
	부여	7	강원도 삼척시 지원동 48-15	강원도 삼척시 지원길 20 (지원동)	2018011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공고 제2018 - 73호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삼척시장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후 연탄보일러 설치비용 상승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이 증대되었기에, 일부규정 및 지급액 등을 수정·보완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범위 개정 및 신설 (안 제3조제4항 신설)
 - 제5조의 저소득층가구(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만65세이상 고령가구, 장애인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가 중도 포기할 경우 대상자 제외 신설
 - ④ 제5조제5호에 해당되는 일반가구로써 전년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포기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는 제외한다.
- 나. 지원대상자 선정 개정 (안 제5조)
 - 본문 중 “시장은”을 “삼척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은”으로 개정

다. 보조금 청구서식 개정 (안 제6조)

- 본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개정

라. 보조금 지급액 개정 (안 제8조)

- 본문 중 “보조금은 연탄보일러를 설치한 1가구당 20만원을 지급한다”를 “연탄보일러를 설치한 1가구당 지급받는 보조금액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개정하고,
- 이하 단서는 삭제한다.

마. 시행규칙 위임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안 제10조)

-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바.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서식 개정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4. 입법예고기간 : 2018. 01. 16 ~ 02. 05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
- 전화 : 033-570-3363 ○ FAX : 033-570-314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samcheok.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일반가구로써 전년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포기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는 제외한다.

제5조 본문 중 “시장은”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지급액) 연탄보일러를 설치한 1가구당 지급받는 보조금액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보조사업 선정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완료·정산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 성명 :

3. 보조사업 완료내역

(단위 : 원)

예산액 (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4. 보조사업비 집행현황

가.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지출일자)	인출액	지출내역		지출 결의서 번호	영수증 번호	지출 일 자
		비목 및 산출내역	지출액			
합 계						
20 (지출증빙서 발행일자)		○ 연탄보일러 설치공사 - 1식 × 00,000원		-		20 (지출증빙서 발행일자)

나.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집행내역	지출액	비 고
합 계				
20 (지출증빙서 발행일자)	연탄보일러 설치	○ 연탄보일러 설치공사 - 1식 × 00,000원		

5.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잔액 발생시 기재)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 생 사 유
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6.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 (변경사항 발생시 기재)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 경 사 유	승인여부
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 승인여부 : 담당부서 승인, 자체내부방침결정 등 기재(관련문서 사본 별첨)

7. 사업완료 확인 (읍·면·동 담당자)

○ 완료 확인일자 : 20 년 월 일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상기와 같이 『20 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사업 완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보조사업자통장사본, 지출증빙 (보조금, 자부담), 전문건설업(난방시공업) 등록증 또는 자가설치 확인서 보조사업 현황사진(전, 후)

20

성명 : (인)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 보조 사업명 : 20 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 사업자 주소 :
- 청구금액 : 금 원 (금 원)
- 청구자 : (생년월일 :)
-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00은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

담당	구분	해당여부	확인내용	확인일자	확인자
공무원 확인	지방세	예) 체납있음	예) 00세 1,000원	. .	성명 : (서명/인)
	세외수입	예) 체납있음	예) 00세 1,000원	. .	성명 : (서명/인)

상기 금액을 『20 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자 : (인)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포기 확인서

본인은 **【20 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본 사업을 포기합니다.
또한 사업포기로 인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1. 보조사업자 현황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2. 사업포기 확인 : 예) 전화통화, 직접방문 등

3. 확인자

- 확인일 :
- 소속 :
- 직급/성명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자가설치 확인서

보조 사업명 : 20 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설 치 자

○ 주 소 :

○ 성 명 :

『20 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연탄보일러 설치를 자가설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삼척시장 귀하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③ 생략 (신 설)	제3조(지원대상) ①~③ 생략 ④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로써 전년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포기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1.~5. (생 략)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 1.~5. (현행과 같음)
제6조(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생 략)	제6조(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① ----- ----- ----- 별지 제3호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액) 보조금은 연탄보일러를 설치한 1가구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비용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	제8조(지급액) 연탄보일러를 설치한 1가구당 지급받는 보조금액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등) ----- -----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붙임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